주기적신고제도 - 퇴출 기능 강화하되 유연성도 담보해야

- 미신고업체감점제도입제안, 일정규모이상에는신고의무면제가바람직 -

최근건설업계는한마디로‘ 죽을맛 ’으로 표현될만큼대부분의업체들이생사기로에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 부동산 규제, SOC 등 공공공사 수주 물량 급감, 최저가 확대, 원자재 급등 및 가격 경쟁 격화로 인한수익성악화, 부도증가등업계내부문제뿐만 아니라 증시 폭락, 국제 유가 상승,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률 둔화, 금리 인상 등대내외적시장환경이모두네거티브한 상황이다. 이런혼란스런와중에 실제 낙찰확률을높이기위해유령회사수백개를만들어입찰담합으로‘ 관급공사나누어먹기 ’를 하던 500여 건설업체들이 최근 경찰에 대거 적발되었는가 하면 기술자 자격증불법대여로사회문제를야기하기도하였다. 이에정부가시장질서확립차원에서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부실건설업체퇴출촉진을위한실태조사를강도높게할것이라는방침이알려지자적잖은업체들이술렁이고있다.

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제는 부실 건설업체에게는 그 도입 취지에 걸맞는 효과가 있는 반면, 건실한 업체들에게는 무의미한행정절차에불과하다.

부실 · 부적격 업체들의 폐해 심화

사실 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 보유 면적 기준까지 폐지하고 토건업 등록 기술자를 완화(12명에서 11명)하는등부실건설사퇴출대책은규제완화기조에밀려역방향으로흘렀고, 덤핑낙찰을조장하는입찰제도 또한 정부의예산 10% 절감 목표라는미명

의 최저가낙찰제확대 기조에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관리지침 (2008. 7. 8)을개정하여 등록 기준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행정제재처분의효율성을높이는여러가지제도적보완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그러나, 건설시장에신규진입하려는업체들에대하여기술자 · 자본금보유확인등심사업무를강화하고있는것은시장진입자들에게 단편적인 계도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진입 억제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없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담합 비리 사건에서 알수있듯이부실 · 부적격업체의퇴출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도권 내에들어와군생하고있는부실업체들이더 이상 업계에 잔존하여 ‘ 한 건 에만 의존해 연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퇴출장치가필요하다. 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미이행등등록기준조차미확인되어 실질적인 시공 자격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관급및민간공사에정상적인것처럼 참여하여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는건전한건설업체들의생존기반마저 위협하여동반부실화시키는부작용을야기하고있기때문이다.

입찰 참가부터 제한해야

부실 업체들의 시장 참여로 선량한 민간 발주자(건축주)의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부실시공은물론하도급업체에 책임전가, 민간건설수주시장에서의덤핑 가격제시로공사비마저왜곡시킴으로써종국에는업계이미지까지실추시키는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주기적 신고 심사 결과, 등록 기준 부적격 판정률이 21% 수준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신고 미이행시 ‘ 지체 없이 ’시정 명령 처분을 하도록지침이 개정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건전한 건설업체보호를위해서라도공공공사입찰제도에주기적신고미이행업체등부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제한기준을규정화할필요가있다.

이에 부적격 업체의 퇴출도 입찰제도 개선을통하여실현할 수있도록공공공사입찰제도에‘ 주기적신고미이행업체의입찰참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정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신인도감점제도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추정가격 50억원미만경쟁입찰공사의적격심사기준상‘ 기타당해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10)’ 규정으로 기술자 보유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것도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방안의 일환으로도입되었다. 따라서그실효성확보차원에서 주기적신고법정기한의일정기간 초과자에대해서도신인도배점도입으로감점처리토록제도개선을하자는것이다.

미신고 감점제와 적심 배제의 병행

현재자격심사신인도의‘ 기타당해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10)를‘ 기술자충족 여부 평가 △5 로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주기적신고를입찰공고일현재법정기한 내신고하지 아니한 자에대해△5 배점 ’을신설할경우상당한효과를거둘것으로 예상된다. 배점제 신설로 발주기관에게는불량건설업체 선정배제기능을제공함으로써 시설 공사 적격심사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명분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업체들에게는 ‘ 영업 정지 에 준하는 경각심고취효과를 예상할수있어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수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있을것이다. 이러한실효성있는제도가 구축된다면 부실 업체들이 발본색원될 수 있다. 더욱이그동안진행하고있는부실업체퇴출작업과병행하여추진하면상호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건설업체는현재건설업등록을한또는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가수리된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상기기간이경과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규정되어 있다(위반시 행정 제재 : 미신고시에 시정명령 등록말소(불이행시), 허위신고 등록말소). 이러한주기적신고제도는신규등록때만기준을갖추고이후엔 무자격영업을 하는 가공 회사(paper company) 등 부실 업체의 양산을 막고 부적격 업체들이 적격 업체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과다한 수주 경쟁으로 건전한 업체를 동반 부실화시키는 등의 부작용 해소를위해 2002년부터도입 · 운용되고있다.

일률적 시행의 양면성

건설업자는 주기적 신고시에 자본금 입증서류, 기술자및보증가능금액보유확인서류등많게는7가지의서류를3년마다정기적으로제출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제출서류대부분은건설업등록보유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인바 부적격 업체의 필터링이란긍정적기능이이해되면서도일부건설업체들에게는불필요한행정절차로 인식되고있다는데또다른문제점이있다.

조달청 유자격 등록업자 명부상 시공능력공시액1,000억원이상인1등급건설업체들의 1개사 평균 보유 자본금이 3,168억원(2005 07년 평균) 이상을 상회하며「외감법」적용을받고, 보유건설기술자수도평균 317명(2007년도실적신고기준) 이상을 유지하고있다. 업력또한최소한10년이상 영위한 견실한 업체들로 이들에게 주기적 신고 제도의 효과와 기능은 백해무익할 뿐만아니라시간적 · 경제적부담만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과잉 규제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시공능력공시액순위 상위군에 속한업체들 대부분의 업력으로 보아 1990년 건설

업등록제 도입 이전인 건설업면허제도하에서 건설업을 등록했던 업체들이다. 따라서, 주기적 신고 기한 도래일이 동일하여 신고 업무가 중첩 · 폭주(월 500개사 이상 처리) 할경우실무담당자들의내실있는서류검토가 불가능하고신고업무처리심사가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실무 담당자들의과중한업무부담도우려되는점을간과할수없다.

일정 규모 이상에는 신고 의무 면제를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실태조사등)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언제든지건설업자로부터 그업무 · 재무관리상태및시공상황등에 관하여기간을정해보고를받을수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조사토록할수있는등건설업등록기준미달자에대한확인이 항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도 ‘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업체에게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더불어건설공사도급하한적용이종전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14개)에서 공기업 · 준정부기관(102개), 지방 직영 기업 및 지방 공사 · 공단(112개)까지 확대(올 7월 1일 시행)되었고, 민간 공사에까지 도급하한제도 적용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건공사업 시공능력공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172개사)에게는 일종의 당근 유도책으로 주기적신고의무를면제해주는것도한방편이 될수있을것이다.

제안컨대 시공능력공시액 일정 금액 이상,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기준 일정 등급 이상 또는건설업자간상호협력평가우수업자, 건설업 업력 일정 연수(예 : 30년 이상) 이상 등객관적이고보편타당하다고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정한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의무에서 면제될수있도록조속히법개정검토가이루어지길기대한다.

효과 극대화 담보하는 탄력적 운영 기대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제도는 1만 3,000여종합건설업자중일부부실건설업체에게는그도입 취지와효과가있는 반면 또다른건설업체들에게는사실상형식적이며 무의미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은 객관적사실이다. 후자들에게현실적으로도 신고 내용으로 보아 단순하고 불합리한 행정업무를3년마다서류신고하도록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제도라 하겠다. 따라서, 이 제도의 운영은 극히제한적 · 선별적으로운영되어야할당위성이 있다.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 전봇대 ’는 뽑아내야 한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들겠다는 MB정부의 정책 기조와도배치되기때문이다.

건설업 등록 기준의 주기적 신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도입 취지에 따른 긍정적인 퇴출효과는충분히그가치가있다. 하지만 ‘ 현실을 도외시한 이면 에서도 알 수 있듯이야누스와같이두얼굴을지닌이제도를 운영하면서모든업자들에게획일적으로적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주기적 미신고등부실건설업체의실효성있는제도적 퇴출제도가 조속히 구축되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또한, 객관적으로부실업체와는 성격과내용상거리가있는 이들에게는 괴리가 존재하는 제도임을 인정하고 신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긍정적방향으로개선해야할것이다.

임성율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진흥부장
sungyul@scak.or.kr

도서 안내

최신 건설산업기본법해설
두성규지음/일간건설신문펴냄/5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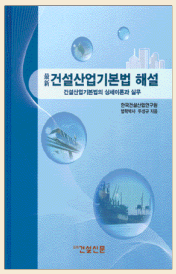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의 신간 해설서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경제실장으로 재직 중인 두성규 박사가 오랜 시간 연구와 강의 등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결정체이다. 특히, 올해부터 큰 폭의 개정을 거친 건산법 및 관련 법령을 건설 실무자들이나 학생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있도록깔끔하게정리한점이눈에띈다.

르네상스 창조경영
최선미 · 김상근지음/21세기북스펴냄/2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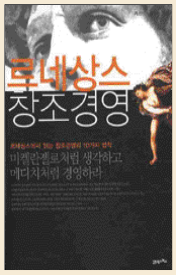

문학, 예술, 과학의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였던 르네상스 시대에서 찾은 창조 경영의 해답! 이 책은 수많은 천재와 거장들이 탄생하여 중세의 암흑을 걷어내고 인류의 근대를 개막시켰던 '르네상스' 시대에서창조 경영의 해답을 이끌어냈다. 창조 경영의 실체를 미켈란젤로, 엘그레코 등 르네상스 거장들의 천재적인 작품을 통해 관찰하였다. 더 나아가 실제 경영의 차원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도 제시하고있다.

2010 부동산대예측
황창서지음/원앤원북스펴냄/398쪽

이 책은 다가올 3년,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투자 방법 및 투자 의사 결정시의 유의점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2010년이 부동산시장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리고부동산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보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부동산시장도 살펴보고 있다.